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28
------	-----

1998. 12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1998년 11월 1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

1998년 11월 16일

다. 상정일자

제16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
(1998년 12월 18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
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기획예산실장 탁병오)

가. 제안이유

노인종합복지관 5개소 신설에 따른 설치
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□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근거 마련
(안 별표1·별표2)

(1)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

※ 소재: 중랑구 면목동 178-8 외 1
규모: 대지 1,493㎡ 건물 2,371㎡

(2)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

※ 소재: 성북구 종암동 66-25 외 4
규모: 대지 1,088㎡ 건물 2,595㎡

(3)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

※ 소재: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외 8
규모: 대지 12,099㎡ 건물 2,636㎡

(4)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

※ 소재: 강서구 등촌동 661-4,
규모: 대지 1,142㎡ 건물 2,532㎡

(5)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

※ 소재: 마포구 창천동 140,
규모: 대지 1,286㎡ 건물 2,530㎡

다. 참고사항

□ 관계법규: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

※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

①~②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
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

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
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
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
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
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(생략)

□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동수)

○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
관한조례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별
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공공시설에 대
한 설치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단일 조
례로 통합 규정 일원화하여 '98.7.1부터 시
행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
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
확충의 일환으로 토지취득을 시유재산관리
계획에 계상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건
립하고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5개소(중
랑, 성북, 은평, 강서, 마포)를 본 조례 제3
조(명칭 및 위치) 및 제4조(운영의 위탁)
의 규정에 의한 별표 1(서울특별시립공공시
설), 별표 2(위탁사무)에 공공시설로 추가
하여 위탁사무 근거를 마련하고, 아울러 서
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
직제규칙 개정('98.8.12)에 따라 공공시설과
위탁사무의 주관국(과)을 변경하려는 것으
로 이는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
됩니다.

4. 질의·답변: 생략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8명 전
원일치)

6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
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